

의안번호	2206827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6.
추계번호	24F618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7조의3 신설 (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)	○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~15%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- 적용기간: 2030년 12월 31일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3 신설 (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 예상

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어린이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·지역을 접근·이용·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·설계·시공·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¹⁾

1)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, <https://www.koddi.or.kr/>) 참조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확정된 감면비율이 필요하나 감면비율(감면비율의 범위만 규정)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알 수 없으며,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·보유 건수 및 건축물 가액(공시가격)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참고로 2023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, 건축물(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전체)이 14,60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객시설 311건, 공원 83건의 순으로 되고 있음

[표 1] 2023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

(단위: 억원)

건축물	여객시설	공원	도로	교통수단	합계
14,609	311	83	9	10	15,022

자료: 배선훈, 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인증 제도 현황과 과제”,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향」 세미나 자료, 2024. 9.26. 건축공간연구원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